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. 8. 22 선고 2022가단21938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로

담당변호사 주명호

변 론 종 결 2023. 7. 11.

판 결 선 고 2023. 8. 22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02/3,362 지분에 관하여 2020. 7. 3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02/3,36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0. 7. 13. 접수 제405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

(1) 주식회사 D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고 한다)은 C에게 2016. 8. 22. 1,100만 원을, 2018. 1. 12. 2,600만 원을 각 대출하였으나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, 2020. 2. 14.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20. 3. 14.경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(2)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764263 양수금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8. 25. ‘피고(C을 지칭한다)는 원고에게 29,847,819원 및 그 중 27,763,418원에 대하여 2020. 8. 20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C의 처분행위

(1) C은 2020. 7. 13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02/3,362 지분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20. 7. 3.자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고 한다).

(2)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8호증, 이 법원의 인천서구청장, 서인천세무서장,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C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문을 부여받은 2020. 10. 16.경 이 사건

매매계약 사실과 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므로,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2022. 5. 24.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을 제1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0. 10. 16.경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 등을 비롯하여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본안에 관한 판단

(1) 사해행위의 성립

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,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, 원고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(2)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2016. 5.경 C에게 1억 5,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(매매대금을 1억 5,100만으로 정하여 그 중 1억 5,000만 원은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고, 나머지 100만 원은 직접 송금하였다),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, 피고 역시 2016. 5.경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,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제3자에 의한 가압류등기도 2건이나 마쳐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‘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계약이 C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’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(3)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
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나진이